

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

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

 추진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☎ 031-8030-2982

개선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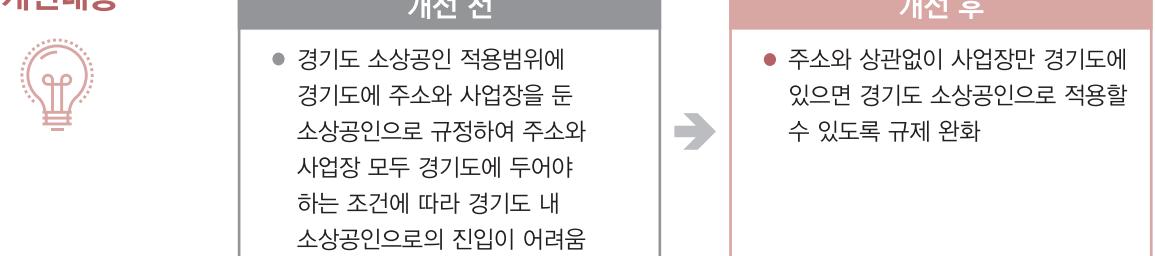
- 경기도 규제입증책임제*를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진입제한 규제가 존재함을 밝굴.
* 도민생활 및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, 소관부서가 규제조치 필요성을 입증·설명하도록 하는 제도. 밝굴된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함
-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여 주소와 사업장 모두 경기도에 두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.

[현 행] 「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(시·군)에 지방세를 납부하고, 도내에서 종업원(인력)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, 소상공인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

개선내용



※ 다만, 창업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의 경우에는,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민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으로 한정

- '22.06.02. '22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'개선권고'
- '22.09.22.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관련 업무협의(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)
- '22.10.07.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 면담(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)
- '22.10.17. 규제완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~10.21.
- '22.11.30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(대표발의 고은정)
- '22.12.06. 상임위원회(경제노동위원회) 의결(원안가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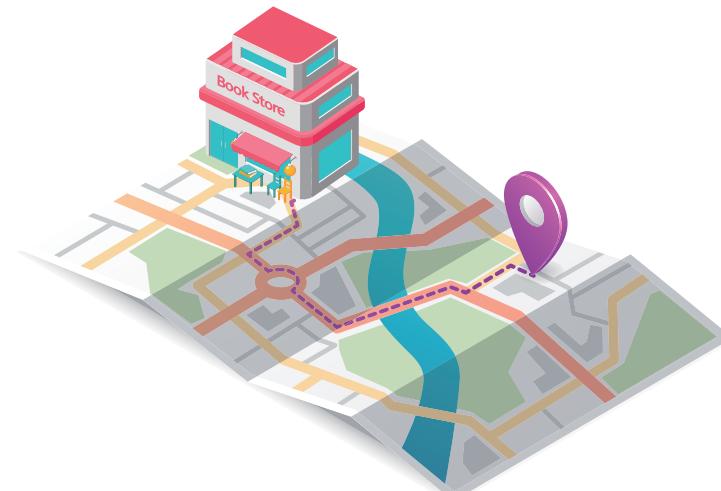
개선효과



-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,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

[「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 내용]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<u>주소와 사업장</u> 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<u>창업예정자</u>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<u>사업장</u> 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<u>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</u> 에 대하여는 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

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☎ 031-8008-4953

개선배경

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영유아가 적응하기 쉽고,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등원의 편리함이 있는 어린이집임
- 다만, 「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(이하 '준칙'이라 함) 제53조(관리주체의 동의 기준) 제1호 나목, 제 16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.
-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 「준칙」과 동일한 경우 인접한 세대의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와 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임.

개선내용



- 개선 전**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2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됨



- 개선 후**
- 「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 제53조제1호나목 및 제53조제6호에서 어린이집 부분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상충하는 부분 해소
-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서 어린이집 삭제

*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도 영업이 가능해짐